준 비 서 면

사 건 : 2000 가합 7960호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근 목 외 5인

피 고 :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시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귀원 2002.8.14.자 제출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권리가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이 1965.6.22. 맺은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일본국의 거듭되는 외교적 보호권 소멸 주장에도 반하는 주장이며 위 한일청구권협정의 관련 문언 및 교섭경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개인의 청구권마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의 근원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즉 1991.3.26. 참의원내각 위원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자의 소련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국회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의원이 "조약상 국가가 방기를 해도 개개인이 소련정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는 있다.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 개인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해도 좋은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고도유종외무대신 관방심의관은 "저도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점은 일소공동선언 제6항에 있는 청구권방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외교보호권의 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국 국민개인으로부터 소련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마저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하여 일본정부는 일소공동선언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일관되게 표명되었습니다. 즉 대표적인 것만 보아도,

1)1991.8.27. 참의원예산위원회

"정부위원--선생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양국간의 청구권문제는 최종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만 각각의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한일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방기한 것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양국이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룰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2) 1992.2.26.중의원외무위원회

"정부위원 --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

리했는가입니다만 이 협정에서는 소위 외교보호권을 방기하였다는 것으로 한국측이 일본국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그와 같은 청구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이를 다루는 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 국내법에 의해 소멸시키지 않은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그 개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권리라고 해도 좋겠고 일본의 국내재판소에 한국의 관계자들이 소를 내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재판의 결과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참의원 및 중의원 회의상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주장을 반복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는 국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사법부의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판례 동향

일본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인청구권판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일본인의 재산권관련된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일중평화조약,일소공동선언관련의 몇 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그 사안과 관련 법규범의 상이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동경지방재판소 1956.8.20.선고 판결(호리모토 vs. 일본국)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46년 점령군 병사의 강도행위에 의해 부상당한

원고가 평화조약 제19조(a)항에 의해 일본국이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본국은 주위적으로 평화조약 제19조(a)에 있어서 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외교보호권만이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되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패전국으로서는 당연히 포기되어야 할 숙명을 가진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조약을 체결하여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평화조약 19조(a)는 일본국이 연합국 군대 또는 정부당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긴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즉 국가의 외교보호권과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포괄하여 포기한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하였고 1959.4.8. 동경고등재판소는 평화조약 19(a)는 외교보호권의 포기 뿐만이 아니라 연합국내지 그 국민에 대한 일본 국민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일본국이 재판과정에서 개인청구권 불소멸론을 주장한 것은 다수 존재하나 법리상 참고로 될 만한 사건은 1974.9.24.의 동경지방재판소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본국은 "평화조약 19(a)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며 일본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일본국민의 개인적 청구권(특히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권리주체가 다

르기 때문에 일본국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다"고 까지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소멸여부에 대해 대표적 판례로 1968.11.27. 최고재판소 판결(아키야마 vs 일본국)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평화조약 14(a)2(1)에 의해 카나다에 있는 재산을 상실한 원고가 일본국 헌법 29조 3항에 의거 일본국을 상대로 손실의 보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평화조약 위 조항에 의해 일본정부가 연합국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재외재산에 대한 처분을 승인한 행위는 일본국이 연합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이행을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충당시킨 것이기에 일본국 헌법 29조 3항에서 말하는 공용수용에 해당하여 일본정부는 보상의무를 져야 하는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평화조약 위 조항은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국민의 재외재산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삼가한다는 취지라고 주장을 하였고 따라서 본건 재외재산처분의 승인은 재산의 권리변동원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도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고 최고재판소도 평화조약의 위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국민이 당해외국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는 소위 이의권 내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판례를 검토하면 주로 피고인 일본국은 주위적으로 개인청구권불소멸을 일관하여 주장을 하였고 재판소는 초기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취하였다가 차츰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을 정식으로 채택하기도 하다가 이어 애매한 입장에서 원고들의 청구권을 배제하였던 것이 일본 판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정부의 해석에 대하여

(1) 한국정부의 입장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과 관련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되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재일한국인피징용자 관련 답변

재일한국인 군인 군속인 석성기외 4인의 전쟁피해자가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던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일본국 법률 127호)' 상의 장애연금지급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 당시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 피징용 피해자들의 장애연금지급청구가 다른 일본인 군인군속과는 달리 위 원호법 부칙 2항에 의해 일본국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그 기각의 주된 논리가 피고측의 주장 즉 위 재일한국인 피징용 부상자들의 원호문제는 양국간의 외교적 협상에 해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에 위 부칙 2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재일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이 개인의 권리를 일본국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외교적 교섭에 의해 해결이 예정되

었고 실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해결이 되었는가가 문제시 되는데 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고 되어 있고 다음 2항에는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규정하면서 그 a항에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일한국인 피징용자들은 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동 협정의 제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일한국인 피징용피해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일부 소멸되었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에서 그 범위와 관련하여 그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동조 2항 a 에 따라 그 개인의 권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1994.1.26. 당시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낸 민원회신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2항 a는 동조 1항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재일한국인의 권리,재산관계를 청구권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을 하여 재일한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국인 군인군속의 권리를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암묵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2조 1항에 의해 개인의 권리등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일한국인의 권리등은 제2조 2항상의 예외사유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피해자관련

이와 관련되어서는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답변등이 있습니다.

● **1991년 7월 10일 이상옥 외무장관의 국회 답변**

"정부 레벨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발언.

● **1995년 9월 20일 공노명 외무장관의 국회 답변**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체결로 일단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금전적보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답변.

● **1997년 11월 6일 이미경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외통부)**

질의: 한국정부가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

답변: 또한 정부는 도덕적 우위의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개별적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1996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일측이 성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 **1999년 8월 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통부 아일 22220-641)

질의: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입장

답변: 군대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인권문제로 1965년 한일협정의 해석과는 별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

질의: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입장

답변: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군대위안부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나,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2000년 10월 9일 김원웅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이정빈 외통부 장관)**

질의: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배상청구권이 끝났는지

답변: 양국 정부간에 청구권문제를 일단락 지었으며, 개인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인단 앞으로 보낸 2001.7.19.자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양성철의 답신에 의하면 "군대위안부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국가범죄로서 일본의 국가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군대위안부문제가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으나, 우리 정부는 1993년 일본정부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피해자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2) 우리 법원의 판례

이에 대하여는 우리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3) 소결

이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가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일본국의 종래입장 및 한국정부의 주된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며 일본의 판례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일본 및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국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와 같은 전쟁 피해자들을 이미 끝난 문제를 돈욕심에 의해 분쟁을 야기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3. 증인신문 및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의 관련조항은 양국 정부간에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같이 한국인 희생자들이 가해자인 일본국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유력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개인들의 권리나 청구권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국정부와 달리 애매한 입장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에서 원고들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 및 용어 그리고 교섭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규범으로 1969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조문화 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제31조에 조약은 조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약 문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는 조약 체결시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는 어디에도 '청구권'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나아가 정부간의 외교적 보호권을 넘어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한일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해석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은 편의적으로 미국내에서 벌

어지는 소송에서는 일본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과는 전혀 다르게 입장을 바꾸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인 양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없고서는 일제강점하 전쟁피해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각국에서의 소송은 근본적인 장애에 봉착하고 말 형편입니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청구권의 정의 규정 및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하면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이나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주장과 같이 14년간에 걸친 협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대한민국의 김종필 특사와 일본의 오오히라 외상간에 개최된 1962년도의 협상에 의해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이 양국간에 합의되게 되었는 바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이나 교섭경위를 통해 협정을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책임자인 위 김종필씨 및 외통부의 조약관련부서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당시의 문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이야 말로 과거사 문제로 더 이상 한일양국이 신뢰관계를 훼손당하지 않는 길을 여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귀원에 의해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002.8.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3/12수령.

2003. 3. 12

준 비 서 면

사 건 2000 가합 7960 손해배상(기)

원 고 박창환 외 5명

피 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 언

피고는 피고 제출의 2001. 2. 7.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행 민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이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통설인 이른바 승인예측설에 따라 선행된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견되면 당해 국내소송을 각하하거나 기일 추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중지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본건 제소가 이러한 중복제소에 해당함을 자세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국제적 중복제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우리나라의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에서는 그러한 선례를 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국제적 중복제소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는바(서울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0가합7060 판결; 참고자료 7 참조), 본건 소송에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하와 같이 동 판결의 내용 및 동 판결이 본건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淸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3-MAR-12 16:57 FROM: TO:0537536963 P.001/013

여 간략히 변론하고자 합니다.

2. 서울지방법원 2000 가합 7960 판결의 내용

가. 사실관계

(1) 한국 소재 회사인 주식회사 고합(이하 원고)은 1996년 7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는 그랜드벨 社(이하 피고 甲)와,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위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갑은 원고가 수출한 제품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 이에 원고는 2000년 5월 12일 미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피고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County 지방법원 (이하 미국법원)에 피고 甲을 상대로 위 판매대리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이 때 원고는, 피고 甲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그 단독주주 피고 乙의 면책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신 (alter ago) 에 불과하므로 본건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 甲뿐만 아니라 피고 乙도 부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乙도 위 소송의 공동피고로 제소함.

(3) 동 소송에서 피고 甲은 미국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진술 및 증거자료를 미국법원에 제출하였음. 나아가, 피고 甲은 2000년 8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판매대리

2003-MAR-12 16:57 FROM: TO:0537536963 P.002/013

점 계약에 의한 피고 甲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미국법원은 위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요 자료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제1회 변론기일을 2002년 12월 2일로 지정하였으나, 동 기일은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1회 연기되어 2003. 3. 14.로 지정됨.

(4) 한편, 원고는 미국법원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00년 12월 5일, 대한민국법원에 피고 甲 및 피고 乙을 상대로 위 판매대리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

나. 법원의 판단

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법원은 일단 국제적 중복제소가 문제된 사안의 경우 승인예측설에 의하여 그 적부를 심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이며, 이에 따라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고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동일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에 재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점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3-MAR-12 16:57 FROM: TO:0537536963 P.003/013

이를 바탕으로 위 사안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제1호의 요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甲 및 피고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 소송은 채무자인 피고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대한민국 법령 혹은 조약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미국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나아가 제4호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간의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명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쌍방의 국내 법령 또는 판례 등에 의하여 법률상 상호 보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족하다. 나아가, 외국의 승인요건이 국내법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점에서 동일하거나 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서 승인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민국 판결이 승인되기 위한 조건은 대한민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조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과 캘리포니아 주 상호간에는 서로 상대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쳐 원고가 2000년 5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2000년 12월 5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결국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3.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이 본건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은 승인예측설을 정면으로 도입하고,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미국 및 대한민국법원에 각각 제기한 소송을 민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보다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소송은 원고들 대부분(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현재 일본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 중(이하에서는 이 일본국에서의 소송을 일본국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즉, 원고 김돈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본건 소송과 일본국 소송은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정 률(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3-MAR-12 16:57 FROM: TO:0537537696 P.005/013

따라서, 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일본국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승인예욕설에 따라 본건 소송 중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위 2001. 2. 7.자 준비서면에서 일본국 소송이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혹은 조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1998년 5월 28일 선고 97가합2982 판결(참고자료 8)은 대한민국이 법령 혹은 조약으로 일본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본건 및 일본국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제2호의 요건은 일본국 소송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제3호의 요건인 일본국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① 위와 같이 일본국 소송의 피고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상, 외국 판결의 승인과 관련된 피고의 방어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일본국 소송이 절차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할 여지가 없으며, ② 일본국 소송의 목적은 본건 소송과

2003-MAR-12 16:57 FROM: TO:0537536963 P.006/6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라는 재산적 청구이므로 그 청구의 인용 혹은 배척 여부가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나아가, 제4호의 요건인 상호보증과 관련하여 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7960 판결은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간의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명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쌍방의 국내 법령 또는 관례 등에 의하여 법률상 상호 보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족하다. 나아가, 외국의 승인요건이 국내법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점에서 동일하거나 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서 승인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의 원문 및 그 번역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外國裁判所の確定判決の効力)

第百十八條

外國裁判所の確定判決は、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を具備する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一 法令又は條約により外國裁判所の裁判籍が認められること。

二 敗訴の被告が訴訟の開始に必要な呼出し若しくは命令の送達（公示送達その他これに類する送達を除く。）を受けたこと又はこれを受けなかったが應訴したこと。

三 判決の内容及び訴訟手續が日本における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に反しないこと。

四 相互の保證があるこ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3-MAR-12 16:58 FROM: TO:0537536963 P.007/013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

제118조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에 언급한 요건의 전부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1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 (공시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송달을 제외한다) 을 받았을 것 또는 이것을 받지 않았지만 응소하였을 것.

3 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일본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는 그 내용이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에는 판결의 승인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위 제주지방법원 97가합2982 판결도 집행판결에 관련된 사안에서 일본국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77조와 같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집행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u>그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거의 같은 취지</u>이고 일본국 실무관례상으로도 외국판결(우리 나라 판결을 포함하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는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일본국에서 우리 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u>일본국과 우리 나라는 상대국 판결 승인에 있어 상호보증이 있다</u>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 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3-MAR-12 16:58 FROM: TO:0537537963 P.008/01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소송 중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부분과 일본국 소송은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며, 일본국 소송에 따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그 승인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 중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8 제주지방법원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문 사본

2003. 3. .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률

담당변호사 최 창 [illegible]

부산지방법원 제 6 민사부 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청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淸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곰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3-MAR-12 16:58 FROM:

않았고 그에 따라 여전히 원고들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함.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호, 제2호, 제3호

2002. 9.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 산

담당변호사 정 재 성

부산지방법원 귀중.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빌딩 4층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000
F A X(051) 951-7001
공증실(051) 951-7007
E-mail:busanlaw@hanmail.net

문서제출요청 목록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외무부	1952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5차)	88-74	88-1221
	"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1-8차)	88-75	"
	"	제1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8차)	88-79	"
	1950-52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88-80	"
	1953	제2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3차)	88-82	"
	"	제2차 한일회담 기본관계 회의록(1-2차)	88-84	"
	"	제2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의록(1-3차)	88-87	"
	1953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결렬경위(1-3차)	88-86	"
	"	제3차 한일회담 기본관계회의록(1차)	88-90 —	"
	"	제3차 청구권위원회의록(1-2차)	88-92	"
	1956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3	"
	1957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4	"
	1958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5	"
	"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3차)	88-98	"
	"	제4차 청구위원회 관계자료	88-99	"
	1958-60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88-101	"
	"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일련 문제	88-102	88-1225
	1960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1-15차)	88-103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희산빌딩 4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851-7 0 0 0
F A X(051) 851-7 0 0 1
공증실(051) 851-7 0 0 7
E-mail: busanlaw@hananet.net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외무부	196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재산 반입 문제	88-114	88-1227
	1960-61	제5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	88-115	88-1227
	"	제5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보고	88-116	"
	"	제5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1-13차)	88-121	"
	1961	제5차 한일회담 미일평화조약 제4조(청구권)의 해석에 관한 미국방성 각서 공개	88-122	"
	1960-61	제5차 한일회담 일반문제	88-123	"
	1961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124	88-1229
	"	"	88-1226	"
	1961-62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88-126	"
	1962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의(동경)	88-130	88-1230
	"	"	88-131	"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위원회 이후의 교섭	88-132	"
	1961-62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11차)	88-133	"
	1962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의 대비 석 중(析買) 한일회담 회의록 합의 미합의점	88-134	88-1231
	1959-62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변제	88-135	"
	1963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의(동경)	88-139	"
	"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담 예비 석중 청구권 관계회의	88-140	"
		제6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자료	88-141	"
	1961-64	제6차 한일회담:대표단 임면관계	88-142	88-1232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 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law@hanafos.net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외무부	1962-64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담 예비 석상 본회의(1-65차)	88-149	"
	"	"	88-150	"
	"	"	88-151	88-1234
	"	"	88-152	"
	"	"	88-153	"
	1961-64	제6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자료	88-154	"
	1963-64	제6차 한일회담: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문제점 연구	88-155	88-1235
	"	제6차 한일회담(속개):본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및 본회의	88-156	"
	"	제6차 한일회담: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1-21차)	88-157	"
	"	제6차 한일회담:기본관계위원회	88-158	"
	"	속개 6차 한일회담: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88-162	88-1236
	1963-64	속개 6차 한일회담:현안문제에 관한 한국측 최종입장	88-163	"
	1964-65	제7차 한일회담:대표단 임면관계	88-164	"
	"	제7차 한일회담: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88-165	"
	"	제7차 한일회담:기본관계 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88-166	"
	1965		88-174	"
	"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회의 및 훈령	88-175	"
	"	"	88-176	"
	"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88-177	"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외무부	1965	한일간의 제협정 서명이후의 추가합의사항 교섭을 위한 국내조치	88-178	88-1239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000
F A X(051) 951-7001
공증실(051) 951-7007
E-mail:busanla@hanmail.net

5/7 기일

외 교 통 상 부

보 통

110-051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상부 / 전화(02)2100-7344 / 전송(02)2100-7944
동북아1과 과 장 유의상 담당자 이상렬

문서번호 아일 22000-
시행일자 2003. 4. 9. (1년)
(공개)

수 신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에 연제구 거제동 1500

참 조 제6민사부
법원사무관 양영수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문서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귀원의 사건 2000가합 7960 관련입니다.

1. 귀원이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상 관련 외교문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공개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의 규정에 따라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일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의 수교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상기 외교문서를 서로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이를 수락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접수 2003. 4. 21 부산지방법원

-15020

외 교 통 상 부 장

2003-MAY-02 17:40 FROM:BUSAN LOW 951 7001 TO:0537536963 P.007/007

2003. 5. 16

부산지방법원
변 론 조 서

12차

사 건 2000가합 7960 손해배상(기)등

재판장 판사 김 종 기 기 일 : 2003. 5. 9. 10:00

판 사 이 훈 재 장 소 : 제304호 법정

판 사 김 종 수 공개 여부 : 공 개

예 비 판 사 강 동 혁

법원 사무관 양 영 수 고지된 다음 기일 : 추후지정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원고들 및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김준곤, 최봉태, 송해익 외 2 명 각불출석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출석

변론갱신

피고 대리인

종전 변론 결과 진술

외교통상부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회신이 도착하였음을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피고 서증)

속 행(2002구합33943호 행정소송결과를 보기 위하여)

법원 사무관 양 영 수

재판장 판사 김 종 기

위 등본입니다
2003. 5. 9.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양 영

준 비 서 면(요약)

사 건 : 2000 가합 7960호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근 목 외 5

피 고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건 소송의 의미

본건 소송은 1944년에 당시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서울 등에서 피고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어 피징용공으로 히로시마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에 의해 재해를 입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원고들 6명은 1974년 5월에 결성된 "한국원폭피해 미쓰비시징용자 동지회"의 회원입니다. 이 재판은 단지 원고등 6인의 재판이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지회의 대표소송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동지회에는 결성당시에는 200명이나 되는 구 징용공이 있었으나 피폭자로서의 건강장애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는 약 60명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는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기인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물자의 생산을 통해 위 전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였고, 전쟁이 끝나고서도 1950년 한국전쟁의 특수경기를 거쳐 독점적 대기업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강제 연행한 원고들에게 강제노역으로 고통 받게 하고서도,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폭피해를 입은 후에도 일본인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확보 등 구원행위를 재빨리 한 것과는 달리 원고들을 유기하여 원폭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증가시키고도 그 후 일체의 배상을 거부하며 차별적 취급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인도에 반한 죄로서 현재 일본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중이나 정작 피해당사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송이 제기되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귀 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실의 개요

가. 당사자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두 일제의 식민지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 징용에 의해 고향을 떠나 일본 히로시마로 연행되어 피고의 감시 하에 강제노동에 종사하다 피폭 당한 후 귀국한 자들이고, 피고는 전시하에 1944년 3월 15일 히로시마기계제작소, 히로시마조선소의 양 공장의 조업개시를 하였고, 히로시마의 양 공장에서 특공병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일본군의 관리 하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노동자가 부족하여 원고들 조선인을 징용공으로 강제 연행하여 강제노동을 시켜 결국 원고들로 하여금 원자핵폭탄의 피해를 입게 한 사용자입니다.

나. 원고들의 강제징용과 피폭으로 인한 피해의 경위

(1) 원고이었던 망 박창환은 1923년 1월 5일생으로 창씨개명에 의한 일본명은 미나모토 쇼우간(咸元昌煥)입니다. 위 원고는 1944년 9월 당시 거주하고 있던 평택군 포승면 신영리로부터 징용당하였습니다. 징용당시의 가족은 위 원고의 부모, 동생 4인, 숙부부부 및 위 원고의 처였습니다. 위 원고 가족의 일은 농업이고 약 750평의 자기 소유지를 포함하여 약 4,50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위 가족 중 위 원고의 아버지와 바로 밑의 동생은 '근로보국대'에 동원되어 평택군에 있는 비행장건설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의 가정에서 농업은 위 원고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위 원고는 동년 동월 20일경 갑자기 마을의 관계자에 의해 징용장을 받고 그대로 연행되어 평택의 송본여관(일본인 경영)에 숙박하고 다음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아침 그곳의 성동보통학교 운동장에 끌려갔습니다. 송본여관에는 마을의 관계자와 경찰관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보통학교의 운동장에는 약 100명의 징용당한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서 일본인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징용당시 위 원고는 "징용으로 인한 일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 급료의 반을 송금한다. 만약 도망을 치면 가족이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송본여관에도 보통학교의 운동장에도 늘 감시를 받아 행동의 자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평택으로부터 철도(화차)로 부산으로 운송되었지만 그 사이 화차에는 일본군이 총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었고 미쓰비시의 사원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부터 시모노세끼까지 연락선에 태워졌고 시모노세끼로부터 히로시마까지 철도로, 히로시마에 도착하고부터는 觀音町까지는 전차, 그 후는 도보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 서쪽 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10명정도의 미쓰비시 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 제작소에는 약 1,500명의 조선인징용공이 있었고 이것이 일대대로 되어 그 아래에 6개의 중대(1중대 250명) 그 아래에 일중대 당 3소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은 일본인이었지만 소대장은 조선인 징용공이었고 위 원고도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원으로부터 소대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위 원고는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서 료(전부 5동)에 거주를 명 받았고 위 원고가 배치된 방은 다다미 12개의 넓이에 그곳에서 12명이 수용되었습니다(후에 위 원고는 소대장으로서 다다미 6개 넓이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위 기숙사는 주위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시 탑이 있어 피고의 사원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 제작소에서의 취로는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기상하여 반별로 점호를 받고 오전 7시에 조식, 그 후 고등사범학교의 학생인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약 50명의 조선인 징용공을 공장으로 인솔, 공장에서 원고들을 공장의 계장에게 넘긴다고 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취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였습니다. 위 원고는 주철공장의 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위 공장은 매립지에 있었고 공장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었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휴일은 월 2회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일이 많을 때에는 야근잔업이 있었고 휴일도 쉬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휴일은 외출하는 일도 있었지만 외출시에는 반장, 소대장, 중대장 등이 감시의 의미에서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 원고에게 지불된 임금은 손에 쥐는 금액으로 월 20엔 정도였습니다. 임금의 명세에 관하여는 급여봉투에 기재가 있었고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세금, 식비, 기숙사비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에는 병원비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으로서도 매월

매월 공제되었지만 동 원고가 통장을 가지고 있은 것은 아니고, 저금의 환불을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위 원고는 대대장으로부터 귀국 시에 저금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본래임금의 반액이고 남은 반액은 가족에게 보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은 1945년 7월경부터는 직장이 빗나 德山 등으로 직장이 바뀐 자들도 있고 혼란상태로 되어 7월 분의 임금부터 지불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통신은 가능했지만 검열이 있어 안부를 묻는 것 이외는 쓰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외의 편지는 보내지지 않아 임금 등의 대우 및 가족에게 급료의 반액이 송금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은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2월경으로부터 전황이 악화되어 편지의 왕래도 끊어져 버리고 가족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조선인 징용공만이 모여 수용되어 있어 일본인 노동자와 대우면에서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식사는 조잡하고 양도 적고 젊은이로서는 언제나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위 원고는 공장에서 취로 중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위 원고를 포함하여 취로 중의 징용공은 전원 날려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위 원고도 턱에 철파편 같은 것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폭후 위 원고는 병사의 지시에 따라 동년 8월 10일경 공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구호활동에 참여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원이 지시하고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 원고는 동년 8월 13일에 군대로부터 이재증명을 교부 받아 히로시마로부터 德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박한 후 시모노세키로 향했습니다. 그 후 잠시 시모노세키에서 머물다가 동년 9월13일경 4명 정도의 징용공(수원 출신자 2명, 평택 출신자 2명)과 함께 밀항배를 빌려 귀국했습니다. 배 삯으로 40엔을 지불하였습니다. 동 원고는 귀국후 평택으로 귀향했지만 부친은 근로보국대 취로로 인해 허리가 아파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농지는 종전에 있었던 토지중 약 3,000평이 해수로 인해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고 동생들은 조금 밖에 남지 않은 농지에서 경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피폭당시에 부상을 입었던 턱은 평택으로 돌아 왔을 때도 아직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후 자택에서 한방약으로 어떻게든 나았습니다. 그러나 귀향후 5-6년이 지나고부터는 숨이 가쁜 증상이 시작되어 그 증상은 그 후 계속되었습니다. 심근경색도 앓고 있다가 본건 소송도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 이근목은 1926년 2월 28일생으로 본건 징용시에는 21세의 자에 대한 연령징용에 맞추기 위해 1923년 11월 28일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인의 창씨개명에 의한 일본명은 마쯔모토 군목(松本根沐)였습니다. 위 원고는 1944년 9월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성주리로부터 징용되었습니다. 징용당시의 가족은 부 이승연과 처 유인순(당시 임신중)과 장남 이길훈 이었습니다. 원고 가족의 일은 농업이고 1,500평 정도의 논과 1,200평 정도의 밭을 소작농으로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노령으로 위 원고가 농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위 원고는 동년 9월 어느 날 오전 10시경 면사무소의 서기와 주재소의 순사가 징용장을 가지고 살고 있던 집을 찾아왔기에 징용장을 자신이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는 15인 정도가 집합했습니다. 그곳에서 면장도 부면장도 서기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순사도 3인 정도 있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군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군청에는 200인 정도가 집합하였습니다. 군청에서는 군수와 경찰서장이 있었습니다. 경관도 14,5명 정도 있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청에는 군수가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내용은 징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 가정의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식사도 나오고 월급은 절반을 가족에게 송금을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의 금액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징용기간은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미쓰비시의 마크가 붙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3명 정도가 군수의 옆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모이자 곧 안성역으로부터 화물차(기차)에 실렸습니다. 차내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화물차에는 감시자가 붙어 있고 미쓰비시의 관계자도 있었던 것 같으나 기억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경찰관은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기차를 갈아탔습니다. 화장실에도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천안에서는 경기도 사람들이 다수 집합하여 그곳으로부터 다시 기차로 부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차중에서 일박을 하고 아침에 부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천안에도 부산에도 미쓰비시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옷을 소독하여 갈아입고 그날 밤에 연락선에 태워져 다음날 아침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습니다. 도 직원은 부산에서 일본의 누군가에게 인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시모노세키로부터는 객차량에 태워져 히로시마까지 왔습니다. 도중에 서는 것도 없었습니다. 동 원고가 들어간 기숙사는 서 료로 그밖에 북 료와 남 료가 있었습니다. 서 료에는 약 300명정도가 수용되어 다다미 12개 넓이의 방에 10인이 잤습니다. 옷은 얇은 국방색의 것이 한벌 지급되었습니다. 아침의 기상은 6시, 조식은 7시였습니다. 학도병이 감시역으로 있었지만 최초의 2,3개월은 엄격하게 인솔을 하였습니다. 히로시마에 도착해서 잠시동안은

달린다든지 제자리걸음을 한다든지 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게 된 일은 동관공장의 일로 취로시간은 아침 8시부터 12시, 식사후 5시인가 6시까지로 그 동안 휴게는 없었습니다. 잔업이 있는 경우는 석식후 보통은 9시경까지 였습니다.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이 나왔지만 위 원고의 경우 철야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의 내용은 동관에 돌을 채워 넣은 것을 들면서 동관을 구부리는 작업으로 10인정도가 붙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지만 위 원고는 사고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업 중에 타박상정도의 상처를 입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큰 상처를 입은 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에서는 크레인 사고로 귀를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휴일은 월2회였습니다. 적어도 정한 날에 모두가 일제히 쉬는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에는 외출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방별로 책임자인 소대장에게 외출허가증을 쓰도록 되어 있었고 집단이 아니면 외출할 수가 없고 집단행동을 하도록 들었습니다. 료로부터 도망을 하는 자도 있었지만 경찰이 찾아내어 발각되면 소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동 원고와 같은 방의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다른 방에는 꽤 있었습니다. 최후의 무렵에는 공습경보가 심하였기 때문에 꽤 도망자가 많았지만 끌려 돌아오는 자도 많았습니다. 임금은 매월 월말의 급료일에 공장에서 회계로부터 봉투에 들은 것을 받았습니다. 급료명세는 봉투에 일본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료비와 국민저금이 공제되고 손에 쥐는 액수는 고작 월 23-4엔 였습니다. 그것과 동액이 송금되고 있다고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저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제되었습니다. 통장등은 없고 인출등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로 급료를 받은 것은 6월말에 받은 것이고 7월에 받아야 할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7월말 급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기다려라고 들었습니다. 가족과 편지를 교환할 수는 있었지만 내용은 소대장(징용공으로 일본어가 가능한 자)에 의해 검열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에 관한 것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편지에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송금에 의문을 가지고 물은 즉 소대장 중대장등이 모두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방에 2사람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자가 있어 대필받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6월 이후에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 원고가 있었던 서 료는 조선인 징용공만이 모여 있었고 식사의 내용은 된장국, 노란무, 밥, 감자, 고구마가 섞여 있는 국한그릇정도 였습니다. 늘 적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자주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철조망을 타고 넘어 시내의 국밥집에 달려가 돈을 주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져 야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징용공에게 쉰

밥이 나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위 원고는 1945년 8월 6일 피폭 당시 공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공습경보가 해제된 직후로 방공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빛을 쐬지는 않았습니다. 안에는 일본인도 포함하여 30인정도가 있었고 저녁 무렵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밖에 나와 일단 료에 돌아왔지만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공장으로 돌아가 해안에서 잤습니다. 미쓰비시의 인솔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후 쭉 공장근처에 있었지만 공장은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8월 20일이 넘어 이재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9월말까지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그 후 하카다까지 일주일정도 걸려 도착하여 배편을 찾았습니다. 식사는 주먹밥을 배급 받아 먹었습니다. 동 원고는 1945년 10월 중순경이 되어 작은 밀항선에 하카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부터 승선하였습니다. 돈은 함께 있던 사람이 서로 내어 지불했습니다. 동 원고는 100엔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30엔 정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배로, 그로부터 약 20시간정도 걸려 열차로 안성군까지 돌아왔습니다. 위 원고가 고향에 돌아와보니 아기가 태어나 있었고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가 징용당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은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이전 경작하고 있었던 소작지도 일손이 없었기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농지해방의 당시에도 토지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귀국 후는 면사무소의 일을 했지만 현저히 원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부터는 다리가 아프고 1988년에는 척추에 수술도 하였습니다. 치료는 쭉 한방약등에 의해 했고 건강보험제도는 최근까지 없었기 때문에 병원의 비용은 꽤 나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건강했지만 최근은 호흡기관이 나빠 숨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1982년부터는 서울의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3) 원고 이병목은 1923년 8월 24일생으로 창씨개명에 의한 일본명은 가와무라 헤이모쿠(河村炳穆)였습니다. 1944년 당시의 위 원고의 가족은 아버지와 처 이안진과 동년 2월5일(음력)에 탄생한 장남등 4인이었습니다. 위 원고등은 일본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 소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작은 아버지와 원고가 하였습니다. 1944년 9월 경찰관이 원고의 집까지 와서 부에게 징용장을 교부하고 원고가 다음날에 안성군청에 출두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부가 원고는 처가에 갔다고 대답을 하자 바로 원고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는 동 원고에게 징용장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돈집까지 가서 원고는 부로부터 자신에게 징용장이 나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징용장을 원고의 부가 수령할 때 교부한 경찰관은 "일본에 1년간 일하러 간다. 급료의 반은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개인물건을 챙겨 안성군청에 집합하였습니다. 군청에는 징용공이 15인 정도 집합하였고 그 가운데에는 평택시의 소외 주창윤도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군수로부터 "일본은 전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달라. 1년간이다. 급료의 반은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고 경찰서장으로부터도 "급료의 절반을 가족에게 보내기 때문에 가족의 일은 염려 마라" 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쓰비시의 사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인은 구라모토라 하며 일본까지 위 원고를 연행하였습니다. 동인은 미쓰비시의 완장을 차고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사등은 없었습니다. 위 원고등 징용된 자들은 하룻밤 군청에서 머문 후 평택으로 가서 그곳에서 경기도 전체로부터 모은 징용공이 집합하여 징용공 전용의 객차 6량에 태워져 부산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6량의 차량중 제일 뒷편의 차량을 탔습니다. 위 원고가 탄 차량에는 미쓰비시의 직원인 구라모토가 동승하여 있었습니다. 감시에 관하여는 군청에 집합하여 평택역까지는 경찰관과 사복형사가 감시하고 있었지만 열차를 타고부터는 객차내는 자유였지만 징용공 가운데에 일본어가 가능한 자를 뽑아 그 사람을 객차와 객차사이의 연결부분을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열차의 창을 열 수는 있었습니다. 감시는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도망을 하면 부모가 괴로워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도망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는 정차하는 일없이 진행하여 밤을 꼬박 달려 다음날 아침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무렵은 3차례의 식사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먼저 신체검사가 있은 후 바로 시모노세끼를 향하여 연락선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시모노세끼에는 다음날 저녁무렵 도착하여 다시 기차로 히로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히로시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히로시마역에 3반으로 나뉘어 하나는 미쓰비시조선소에, 하나는 미쓰비시기계제작소에, 남은 하나는 동경으로 향하였습니다. 배에 타고부터 미쓰비시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식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 원고는 미쓰비시조선소 자재과 창고계에 배속되어 선박 부품중 작고 가벼운 것을 현장으로부터 담당자가 가지러 오면 필요한 부품을 창고로부터 꺼내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안성군으로부터 온 11명이 여기에 배속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잔업은 없었습니다. 감시는 현장에서는 계장인 니시무라라는 일본인이 있었고 조선소전체에는 감시계가 있었습니다. 일의 내용은 그다지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둘 자유는 없고 징용후 4개월 정도되어

위의 상태가 좋지않아 한국으로 돌아가 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회사에 탄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약만은 구내의 미쓰비시병원에서 받을 수가 있어 약으로 병상의 악화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 원고는 임금으로 35엔 정도 받았습니다. 남은 35엔 정도는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족으로부터의 편지에 송금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왜 송금하고 있지 않은지를 회사에 물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급료는 분대장인 소외 방훈재로부터 받았습니다. 명세는 봉투에 기재가 있었고 식비와 기숙비가 공제되고 있다고 알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은 일본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금이라고 하는 기재가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1945년 6월분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예저금에 관하여는 일체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장등을 가진 일도 없었습니다. 위 원고는 당초는 남 료에 있었습니다. 남 료에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그후 북 료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북 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한 하나의 계기는 식사에 일본인과의 차별이 있어 일본인과 징용공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쌀의 양이 많기도 하고 따뜻한 밥이기도 하고 양도 많았지만 징용공의 밥은 쌀 이외의 것이 많이 섞여있다든지 찬밥이었습니다. 북 료는 목조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한방의 크기는 다다미 12개의 넓이로 그곳에서 11인이 생활하였습니다. 동실자는 모두 같은 미쓰비시조선소 자재과 창고계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방에는 붙박이 장이 있었고 그 안에 개인용 상자가 있어 그곳에 사물을 넣고 그 위에 각자의 이불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불은 까는 이불이외에 여름은 덮는 이불이 한 장, 겨울에는 덮는 이불이 2장이었습니다. 식사는 아침저녁은 료의 식당에서 먹고 점심은 료로부터 나무상자에 넣은 도시락을 가지고 갔습니다. 식사의 내용은 당초는 쌀이 섞여 있었지만 1945년 6월을 지나서는 온통 보리였습니다. 식사의 양은 위 원고는 위가 아팠기 때문에 소량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료에는 부대편성이 이루어져 있어 중대장으로는 위 원고를 히로시마까지 연행한 쿠라모토가 소대장은 유타가와 분대장(반장)은 소외 방재훈이었습니다. 분대는 같은 방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료안의 감시상황으로는 료의 부지안에 육군헌병대의 파견대가 있어 료내외를 헌병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료의 입구에 감시는 없었지만 다른 료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밤은 자유시간이었지만 9시에 소등하였습니다. 휴일은 월 2회였고 원칙적으로 15일과 월말이었지만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휴일에는 외출할 수도 있었지만 집단 행동이고 반장이 함께 나갔습니다. 외출의 목적은 주로 식

사를 위한 것이고 핫쵸보리에서 죽등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는 외출해도 식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출도 하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의류는 1회만 제복이 지급되었지만 질이 좋지 않아 곧 헤워져서 위 원고는 지참하여 왔던 것과 구입한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 원고는 가족과는 1945년 5월경까지는 월 1회 정도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는 관부연락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열은 조선어를 반장이 검열관에게 일본어로 읽고 검열관의 승낙이 떨어지면 편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온 편지도 동일하게 반장이 검열관에게 읽어 검열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는 멸치등도 부쳐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편지에서 위 원고는 약속된 가족에의 송금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왜 송금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등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 원고가 피폭 당한 날은 몸의 상태가 나빠 료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료에서 피폭당했습니다. 료는 부숴지지 않았지만 폭풍으로 료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료에는 함께 쉬고 있던 키무라(木村,창씨개명때의 성)와 일층 사무실의 일본인 3명이 있었습니다. 위 원고와 키무라는 2층으로부터 뛰어 내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공호로 도망을 했습니다. 잠시후 공습경보가 해제되었기에 방공호로부터 나와 방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때 유리파편으로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또 식당은 부서지고 그곳에 있던 일본인 3명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료 근처에 살고 있던 일본인으로부터 기계제작소의 근처에 치료를 하여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약을 발랐습니다. 그곳에는 불에 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료로 돌아왔지만 료내에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징용공들이 료의 부지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시동안 생활했습니다. 그 동안 미쓰비시로부터의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잠시후 군이 와서 이재증명을 써주어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취척을 찾아가든가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원고는 다른 징용공 6명

의 농업을 돕고 일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국후 위 원고도 동일하게 다른 집의 농업을 도와 일당을 받아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여 왔습니다. 위 원고는 그 후인 1948년 1950년에 행해진 농지해방에서 소작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1961년까지 일용의 생활을 하였고 동년으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도록 되어 겨우 생활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위 조합에는 그 후 20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직하고 있습니다. 위 원고는 귀국 후에도 종전부터 위의 이상에 더해 피폭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전신에 반점이 나서 가렵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정도 전부터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82년 이후 도일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피폭시에 체내에 들어간 유리와 바늘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수술로 빼내었습니다. 그 후 4차례에 걸쳐 도일치료를 받았고 3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즉 반점등은 사라지고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귀국해서 잠시 있으면 다시 증상이 본래대로 되돌아 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원고는 위궤양과 요통으로 경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으로부터 2시간정도 걸리지만 지정 병원이고 무료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월 몇회 정도 다녔지만 현재는 월 1회 진찰을 받고 그외는 평택내의 그리스도교 병원에서 경희병원의 진찰에 기초하여 약을 타고 있습니다.

(4) 원고 김돈영(金敦永)은 본적이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8으로, 1923년 9월 25일생으로, 창씨명(일본명)은 가나이 돈에이(金井敦永)입니다. 위 원고는 1944년 9월, 당시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에서 징용되었습니다. 징용당시의 가족은, 부모, 형 1인, 남동생3인, 누나 1인이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본인은 조선정병주식회사 소사공장(素沙工場) 용도계(用度係)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조선정병주식회사는 징용영장을 보류시킬 수 있는 회사였으나 군청에서 면으로 징용할당이 내려왔는데 면에서는 리로 할당하여 연령별로 인원을 선발하였는데, 위 원고의 당숙이 면장으로 근무하다 보니 징용인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 가게 되었습니다. 44년 9월 면직원이 위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부천군 소사역에 25명이 집결하여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부천군은 섬에 6개면, 도서에 4개면이 있는데 10개면에 모두 할당이 되어 담당자가 소집을 하여 인솔하였으며, 열차역에 도착하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있었고, 부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

산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미쓰비시 직원에게 인계인수를 하였는데, 당시는 어디로 가는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후에 귀국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니, 새벽녘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시모노세키에서 열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히로시마역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역에서 징용자 전원은 전차를 타고 해변가로 갔으며,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히로시마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나 도착하고 보니 어느 회사의 기숙사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군대식으로 편성을 중대, 소대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개 료에 다다미 12개 넓이의 한방에 12명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자 솜이불과 생활필수품을 담는 박스를 지급 받았으며, 저녁때가 되자 식당으로 집결하였습니다. 식당은 상당히 컸으며, 약 1천 500명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이 따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의 양은 절대 부족하였으며, 일본인들이 배식을 하는데 저울에 달아서 밥을 나누어 주었고,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였던 징용자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무단 이탈하여 도주하여 걸리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서신연락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일체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급료는 용돈정도만 지급되었으며, 월급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는데 대하여 회사관계자에게 항의도 하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오전 6시경 기상하여, 식사를 마치고 8시경에 기숙사를 출발하여 회사로 가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조장은 일본인이었고, 일본인 5명당 조선인 5-6명정도로 1개조를 구성하여 조장의 지휘아래 작업을 하였습니다. 위 원고가 주로 했던 일은 도리스케라 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어 리벳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후 5시경이면 하루 일과가 끝났고, 일과 후에는 기숙사로 돌아왔고,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난 이후는 약간의 자유시간을 주었으며,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점호를 하고 취침을 하였습니다. 수시로 공습경보가 울리면 방공호로 숨고,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B-29가 정찰을 전개하였고, 원고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 히로시마 시내중심부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B-29가 히로시마 시내를 향하여 갔는데, 위 원고는 정찰로 알았는데,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커다란 구름이 피어 올랐으며, 원고는 공장에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회사였지만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공장의 유리창이 깨져나갔으며, 거센 바람에 건물이

허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원폭투하로 인하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폭발하는 광경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귀국하여서는 양쪽 눈을 수술하였습니다. 45년 8월 6일 원폭투하 이후는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징용공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45년 8월 15일이 되어 라디오 뉴스를 듣고, 일본이 패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든 귀국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용공들은 회사측에서 귀향선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몇몇 징용공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인 징용공들이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45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배편을 마련해 주었고,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귀향하였습니다. 선박승선요금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용돈을 절약해서 마련한 여비를 가지고 열차표를 사서 징용당시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근무한 회사를 찾아가자 일본인은 모두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회사 운영은 엉망이었습니다. 부천군청을 찾아가 여러 사람에게 직업알선을 부탁하여 전매청에서 약 25년 가량 근무하다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전매청에서 재직할 당시, 시력이 자꾸 약해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42세가 되는 해에 양쪽 눈을 수술하였으며, 현재도 시력이 많이 나쁜 상태입니다.

(5) 원고 정창희는 1923년 9월 19일생 남자이며,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에서 3남 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창씨명은 노무라 쇼유기(野村昌喜)입니다. 위 원고의 아버지는 미국사람이 운영하는 광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셨고,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서울 충남 홍성을 오가며 살다가 소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1944년 9월 당시 거주하고있던 경성부 중구 남미창정(京城府 中區 南米倉町)에 있는 교회의 사택에서 징용되었습니다. 원고는 보통학교에 6년간 다녔고, 일본어가 다소나마 가능하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에 근무하였으며, 기차의 승차권인쇄를 하였습니다. 1944년 8월 동사무소의 직원이 징용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때 "국가총동원령에 의거 징용영장을 발포하니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징용영장에도 「국가총동원령에 의거 산업전사로서 소집함」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도국이라도 열차승무원이나 생산직 노무자는 현장징용이라 하여 별도의 징용을 가지 않았지만 위 원고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현장징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직장에 보고하였습니다. 직장 책임자인 계장이 서울시청에 직접 가서 징용담당자에게 "우

리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징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징용담당자는 "이 징용은 해당 연령자는 누구나 가야 한다. 징병과 마찬가지다. 뺄래야 뺄 수 없다. 군대 가는 셈치고 갔다 와라"고 하였습니다. 징용영장을 받은 후 약 10일 후에 위 원고는 경성부청사(지금의 서울시청)로 소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경성부청 징용담당자와 미쓰비시 마크가 새겨진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완장을 찬 미쓰비시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위 원고와 같이 중구에서 소집된 사람들 약 200여명이 있었으며 종로 2가의 어느 여관으로 가서 함께 1박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원고는 용산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는 군의 헌병이 징용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B-29가 공습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지(死地)에 보내는 줄 알고 있었으며, 눈물로 환송해 주었습니다. 헌병들은 원고 일행들을 환송하기 위해 나온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군도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일행들은 용산역에서 객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끼(下關)까지 가서 기차로 히로시마까지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때까지 징용자들을 인솔한 사람은 국민복을 입은 미쓰비시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찬 미쓰비시 직원이었습니다. 도망자가 발생할까봐 감시는 삼엄하였습니다. 히로시마에 도착 후 위 원고는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로 보내져 南觀音町의 북 료에 거주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위 원고가 배치된 방은 다다미 12장 크기였습니다. 료는 1개 중대씩 2층 건물이었으며 16분대로 나뉘어 있는데 1개 분대의 최대 인원이 12명까지였으며, 총 16중대가 있었습니다. 료에는 구보다(久保田)중대장(16중대)과 일본인 소대장이 무단 외출자나 도주자가 없는지 감시하였습니다. 료에서의 식사는 플라스틱 용기에다 기름 짠 콩깻묵에 보리와 쌀을 약간씩 섞은 밥이었으며, 된장국이 주식이었으며, 1주일에 한번씩 말고기를 주었습니다. 21세의 한창 나이였기 때문에 식사량은 절대 부족하였으며, 집에서 평소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식사였지만 그나마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는 종이로 만든 옷을 지급 받았으며, 비라도 맞으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일본인도 징용되어 와서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동료로 별도로 수용되었습니다. 위 원고는 료의 분대장으로서 밤 9시에 점호로 소대장에게 보고한다든지, 식권을 배분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미쓰비시 도착 후, 훈련장에서 약 2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미쓰비시조선소의 제3공장 배관부로 배치되었습니다. 료에서 공장까지 인솔은 일본인 소대장이 하였습니다.

일의 내용으로는 처음에는 철판을 자르는 일이었으며, 파이프를 구부리고 연결하여 용접하는 일이었으며,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점심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이 1시간 주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수경」이 항상 순시를 하였고, 징용자들이 일을 태만하게 하는지 감시하였습니다. 징용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끌고 가서 구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몸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원고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소통이 폭발하여 징용공 1명이 눈을 실명한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방 동료였던 가와모토(川本)라고 하는 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히로시마 현립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처음에 급료를 받았을 때 "여기서 봉급을 전액 지급하면 전부 써 버릴 테니, 가족에게 반액을 송금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30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급 받은 30엔으로 원고는 주로 죽을 사먹는데 썼으며,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밥을 해달라고 하여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일행들은 봉급의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징용자들의 식사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헌병대로 끌려가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노예였으며,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았으며, 오로지 아무 탈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 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로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대개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편지는 헌병대에서 검열을 받아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원고는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 갈까 봐 도주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위 원고가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원폭투하 직후에 번갯불이 번쩍하였으며, 천둥 같은 폭발음이 들렸고, 이어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3공장은 철제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폭풍에 몸이 날려가기도 하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해변가에 파 놓은 방공호로 피신하였으며, 저녁 무렵에야 료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폭음으로 인한 유리파편 때문에 부상을 많이 입었지만 작업현장에 있던 징용자들은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징용자들 중 시내의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모두 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폭투하 이후, 미쓰비시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도 없었으며 료에서 각자 개인행동을 하였습니다. 2,3일 후부터는 식사도 배급되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배급을 받으면

서, 원고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다, 1945년 8월 15일에 원고는 조선소의 사무소에서 일본천황의 항복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루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8월 16일인지 17일인지 확실치 않지만 또 한 명의 징용자와 함께 귀국을 위하여 회사를 떠났고, 걸어서 히로시마까지 가서 열차를 타고 오거리역까지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염전에서 인부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일자리를 얻어 인부들과 합숙을 하면서 일을 하였으나, 폭우가 내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조선인촌을 찾아가 가지고 있던 옷과 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하여 시모노세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관부연락선이 두절되어 밀선을 타려 하였으나, 승선 도중에 물에 빠져 겨우 목숨만 건져 다시 시모노세끼로 와서 연락선이 다시 운항을 한다는 말을 듣고 8월 30일경 2번째로 출발하는 연락선을 타고 귀국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1945년 9월 1일경에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매일 서울역에 나가 히로시마에 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위 원고가 징용을 간 후에는 가족들의 생활은 빈곤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해방을 맞아 원고들은 뛸 뜻이 기뻤습니다. 위 원고는 징용당시의 직장이었던 철도국에 다시 복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귀국 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갔습니다. 위장병과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귀국 후 1년 정도 후에는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일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10일 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만, 그 직후에 6.25사변이 발발하여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6) 원고 정상화(鄭尙華)는 1923년 10월 25일생 남자이며, 창씨명은 히로야마 쇼우가(廣山尙華)입니다. 위 원고는 1944년 10월경에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정목 90번지에서 징용되었습니다. 징용당시 위 원고는 양친과 누님,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남동생은 아직 16세로 용산중고등학교에 학생이었고, 여동생은 보통학교의 학생이어서 아직 어렸기 때문에 원고는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원고가 번 수입이 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위 원고가 다니던 공장은 일본에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 그것을 조작하여 제약공장에서 쓰는 약병을 만들었는데, 기술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수당이 많았습니다.

1944년 10월경에 서울시청으로부터 징용영장이 내려왔으며 "연령 징용이다"고 들었습니다. 군인으로 징병 갈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위 원고에게는 연령 징용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집된 후 약 1주일 정도 후에 용산구청 앞 광장에 출두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원고와 같은 징용자들이 약 40-50명이 모여 있었고, 미쓰비시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완장을 두른 일본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 일본인들에 의해 미쓰비시까지 인솔되어 갔습니다만, 그 일본들 중 2명의 이름이, 「久保田(구보다)」, 「와타나베」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앞의 광장에서 징용자들에게 설명을 한 사람은 구보다였습니다만, 이때 "징용기간은 2년간이다. 기한을 맞추어 일하면 돌아올 수 있다. 봉급은 한국으로 송금된다.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분위기는 삼엄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징용가서 영영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으며, 위 원고도 역시 이제 가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심정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용산구청앞에 출두한 날 원고는 서울시내의 관철동이라고 하는 곳의 여관에서 1박을 하였고, 다음날 용산역까지 인솔되어 갔습니다. 그곳에는 180명정도의 징용공이 모여 있었으면, 「서울중대」로서 용산역에서 객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부산에서는 영도에 있는 여관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수백명의 징용자들이 순차적으로 텐트로 들어갔으며, 의복은 소독하였으며, 주사를 맞은 후 승선하여 저녁 무렵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히로시마에 도착하였고, 이때까지 미쓰비시의 회사관계자가 인솔, 감시하였으며 원고 일행들은 하루 3번씩 점호를 받았습니다.

히로시마에 도착 후 위 원고 일행들 서울중대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북 료에 거주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11, 12명씩 나뉘어 방을 할당 받았으며 위 원고가 배치 받은 방은 다다미 12장 크기였습니다. 원고는 미쓰비시 도착 후 최초의 1주간정도 훈련장에서 제식훈련을 받았습니다. 료에는 칼을 찬 사람이 감시하였고, 헌병대가 료까지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의 제3공장에 배치되어 배관하는 일을 지시 받았습니다. 일은 하루 9시간 정도 였지만 주 3회 철야작업도 있었으며, 철야작업을 한 다음날도 통상적인 작업을 계속한 적도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철야작업이 계속되어 작업중 졸다가 떨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위 원고가 받은 구체적인 임금에 대하여 기억할 수 없지만,

얼마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앞서 말한 「久保田(구보다)」로부터 몇 번이고 "가족에게 송금하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돌아갈 때 저금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가족에게 송금이나 저금 때문에 지급금액이 적겠다고 생각하였으나, 가족들에게 편지로 확인한 결과 송금은 전연 없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 답신을 받고서 위 원고는 미쓰비시측에서 송금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징용중에는 어떻게 든 하루라도 빨리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묵묵히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공장이나 료에서의 식사는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었으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식사 량이 더욱 줄어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 원고는 일을 열심히 하여 지급 받은 담배를 모아서 먹을 것과 교환하기도 하였고, 지급 받은 도시락을 다 먹은 후 죽을 사먹기도 하였고, 지급 받은 대부분의 급료를 전부 먹을 것을 사서, 부족한 배를 채웠습니다. 징용자들의 식사에 대한 불만은 대단하였고, 미쓰비시로 연행된 지 5개월정도 지나 료에서 생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생굴에 굴 껍질이 섞여 있었는데 이것을 돌이라고 생각한 징용자들이 "이런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며, 소동을 일으켰으며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위 원고를 포함하여 징용자 10명 정도가 헌병대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 때 위 원고는 헌병으로부터 2시간 정도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린 채 밧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는 등 고문을 받고 료로 돌아왔지만, 그 후 돌아오지 못한 징용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에서 근무할 때 일본인들은 사복을 입었지만 조선인 징용자들은 미쓰비시로부터 지급 받은 국방복과 같은 옷을 지급 받았으나, 이 옷은 종이와 넝마를 얽어서 만든 옷으로, 옷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초소의 감시는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었으나, 료의 주변에는 군부대(헌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징용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헌병대가 연행해 가서 고문을 하거나 형무소에 구속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폭 당시 형무소가 전소되었기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조선인 징용자들 역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 위 원고는 江波 제3공장에 있었습니다. 폭발 순간, 원고의 몸은 공중으로 뜨는 기분이었으며, 폭음이 들렸는지 어떤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위에서 슬레이트나 유리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료로 돌아와 보니 료의 유리는 모두 깨져

있었고, 식당의 기와도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 후 미쓰비시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며, 료의 동료인 소외 안영섭과 1명의 징용자와 함께 셋이서, 5-6일 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장의 가동은 완전히 멈추었으며, 일본인들 역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회사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없었으며,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징용자도 없었습니다. 위 원고외 2인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시모노세끼까지는 어떻게는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걸어서 히로시마에서 가까운 고이역으로 갔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지만 열차가 서서 내렸고, 다시 시모노세키로 갔습니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이틀 후,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모노세키에서 밀선을 타고 귀국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밀선을 타려면 120엔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모노세끼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있다 하여 가보니 조개를 잡는다든지, 피난민의 짐을 나르는 잡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개를 잡아 한국식당에 주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귀국하려고 하는 같은 서울출신의 위 원고 정창희씨를 우연히 만났고, 돌아가면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안부를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정상화는 약 2개월간 일을 하여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20일경 밀선과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역시 미쓰비시로부터는 급료가 가족들에게 송금되지 않았고, 공장에서 일하였던 원고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이 이루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위 원고는 자동차의 수리일을 하였지만, 귀국 후 10년 정도부터 피로감이 몰려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고혈압과 요통, 백내장, 손발 떨림으로 고통 받았으며, 1995년과 1996년에 도일치료로 히로시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폭자 건강수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가. 서론

피고의 위법행위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행한 강제연행으로부터 열거할 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없을 정도이나 간단히 요약하면 원고들을 강제연행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킨 행위 및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피폭 당하였음에도 일본인들과는 달리 하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와 그 후 일본의 패전 후 원고들의 귀국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행위입니다.

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피고는 노동력확보라는 목적하에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을 이용하여 스스로 담당자를 조선반도에 파견하여 원고들을 강제연행하였고 히로시마에 연행한 원고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요소요소에 감시가 배치된 료에 수용하고 공장으로 오고 갈 때도 학도근로학생등에게 인솔을 시키고 그 이외의 외출에는 감시를 하고 각 공장에서도 감시계를 두는 등 원고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식사를 주지 않아 공복하에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을 노예로 취급한 것이며 적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가 원고들이 피폭 당한 후 방치한 행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의 두 개의 공장은 파괴되어 조업할 수 없게 되고 원고들이 수용되어 있던 료의 건물도 폭풍으로 인하여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 가운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폭 당일의 오후에는 피해대책본부를 古田町 古江의 古江청년회관에 설치하여 일본인 종업원의 구제 복구대책을 검토하고 우선 당면대책으로서 이재종업원 구원의 수색대를 시중에 파견하여 일본인 종업원의 육친, 연고자의 수색을 계속하는 등 일본인 종업원에 대하여는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피재공장의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갔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식량이 부족한 전쟁 말기인 당시에도 약 1년분의 식량을 비축하여 있었고 일본인들에게는 밥을 하여 주는 등 구호조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 조선인 징용공에 대하여 하여야 할 피난장소나 식량의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을 피폭된 상황에서 방치하는 등 하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 조선인 징용공이 그 동안 수용되어 있었던 료로부터도 퇴거하게 하여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다른 일본인 종업원들과

차별하여 조선반도로부터 징용하여 데려 온 원고들을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라. 원고들을 안전하게 조선반도로 귀환 시킬 의무를 해태한 행위

피고는 원고들 조선인 징용공을 강제노동시킴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고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징용령에 의하더라도 송환여비의 지급 등 원고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정하여져 있기에 피고는 원고들을 그 주소지로 안전하게 송환할 의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조선반도로 귀환시키는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귀환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벌어 만든다든지 밀항선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 임금등의 미불

피고는 원고들과 형식적으로는 노동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또한 국민저금의 환불을 하지 않았다는 위법행위가 존재합니다.

4. 피고의 책임

가. 국제법적 책임

(1)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연행하여 엄중한 감시하에 노동을 시킨 것은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금지하고 있던 노예제의 금지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19세기에 이르러 1814년,1815년 파리평화조약, 1841년 런던조약, 1862년 워싱톤조약등 노예제에 관한 다수의 조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예제에 관한 금지는 국제법상 유스고겐스(강행법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예제 금지의 규범은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피고와 같은 기업도 강제노역에 따른 기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개인에 대하여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당시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고 원고들을 강제노역에 시킨 것은 위법하며 국제법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뿐만 아니라 1930년 체결된 ILO제29호 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제2조 1은 "누구라도 처벌의 위협아래 강요되거나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일체의 노무"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동 1조의 1은 강제노동은 최단기간에 폐지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1조의 2는 폐지될 때까지 노동종사자를 한정하고 노동기간 및 시간의 한정, 상당한 보수의 보장, 노동재해의 보상, 건강의 유지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사기업에 강제노동을 허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위 당시 ILO 제29호 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원고 망 박창환등이 ILO에 제소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1) 처벌의 위협하에 의사에 반하는 이동과 노동을 강요한 점, 2) 위 제29호 조약 제12조 1항에 의하면 강제노동의 최장기간을 노무장소의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60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계약기간으로 1-2년이었고 1944년 이후에는 경찰의 적나라한 폭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장이 강요된 점,3) 동 조약 17조 (3)에는 노동자가 노무장소에 왕복하는 것은 행정청의 책임 하에 최고로 안전한 운송방법을 사용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패전후 비용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방치한 점, 4) 동 조약 14조에 의하면 임금의 평등과 현금지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임금의 차별은 물론 임금의 대부분을 강제저금 시키고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기망한 점, 5) 동 조약 16조 2항에 의하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숙박에 관한 일체의 조치를 강제노동허가의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일본본토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열차와 화물배에 처넣어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고 굶주리게 만든 점, 6) 동 조약 15조에는 노동재해를 만난 경우 노동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해 보상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으로 인한 재해에도 일체의 보호의무를 하지 않은 점등이 조약위반으로 다루어 졌던 것입니다.

(3) 또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조례에서 실정법화 된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전전 혹은 전시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 행해진 살육,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그 외의 비인도적 행위"중 전형적인 노예적 혹사 및 그 외의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

으로 인도법의 보편적 제 기준의 위반은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참고로 1970년 서독 연방최고재판소는 강제연행,강제노동에 의해 건강을 해친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한 판결가운데에 강제연행은 내셔날리티를 이유로 한 박해로서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 피해자에게 국제법적으로 권리주체를 인정하려는 흐름은 192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찌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독일국가가 연방변제법, 연방보상법에 기해 직접 개개인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실현하고 있고 미국,캐나다등도 차별적 강제이주와 재산몰수에 대하여 사죄 및 배상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전쟁범죄 개념이 확립된 1930년대부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국제관습법이 확립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언급된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국내법상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짐은 물론 규범성을 가진 국제법규로서 귀 원에 의하여 법원으로서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에 관하여는 국내법상 시효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습니다. 1968년 11월26일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시효불적용 조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이 조약의 전문에는 시효불적용의 이유가 명확히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를 근거로 한 민사상의 보상청구권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국내법적 책임

우리 민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 민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피고의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지불 및 안전배려의무 등 채권 채무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

SAMIL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귀 원의 관할권에 대하여

가.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면 제1항에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사무소가 존재하는 귀 원의 관할지역에 있습니다. 피고의 부산사무소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무소로서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 일본인 직원이 1명, 한국인 남자직원 2명 및 여자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대한민국내 영업을 위한 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귀 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귀 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귀 원이 소재하는 대한민국 부산은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갈 때 집결한 장소이며 피고가 일본으로 원고들을 강제 연행한 대한민국내의 마지막 불법 행위지입니다. 불법행위지의 재판적과 관련하여 요건사실 전부의 발생지만이 불법행위지인 것이 아니고 그 구성요건중 어느 한가지 요건사실의 발생지라도 불법행위지로 되어 재판적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특히 가해행위지와 손해발생지가 2개국이상에 걸쳐 있을 때에는 우선 가해행위지가 불법행위지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바 이점에서 보더라도 귀 원에 정당한 관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945.8.15. 일본국의 패전에 따라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귀환할 때도 부산항을 통해 입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의 편의, 피해자에 의한 제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귀 원에게는 불법행위지로서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우리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국제적 재판관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학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

념에 비추어 보아 귀 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1) 즉 민사재판권이란 사법권의 한 권능으로서 민사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행사되는 국가권력으로서 국가주권의 표현인 것입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고에 의해 중대한 법익침해를 당하였고, 현재도 피고에 의해 아무런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령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익침해에 대해 원고들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이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표현으로 정당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제2차 세계대전중 군수물자를 생산하면서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조하여 그 결과 원고들의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였고 전쟁후에는 전쟁전의 기업의 자산과 조직을 승계하여 국제적 규모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부산에 사무소를 개설하

에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국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피고의 거소, 법인 기타 단체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의무이행지, 피고의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기타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함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또한 일본국내에 영업소를 가진 외국 법인인 말레이시아 연방국의 항공회사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1981.10.16.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인 나고야 지방재판소가 운송계약의 이행지, 계약 체결지 및 비행기 추락 사고발생지가 모두 말레이시아 연방국내이기 때문에 위 계약 또는 위 계약에 기인하는 본건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는 모두 말레이시아 연방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말레이시아 연방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된 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일본국 최고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여 일본국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해석을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한편 내국 재판적의 존부로부터 민사재판관할권의 범위를 거꾸로 추지한다는 역추지설을 입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국제적 소송경합의 문제

아울러 원고들의 일부가 일본국내에서 피고 및 일본국을 상대로 동일한 재판을 제기하고 있어 일부 원고들의 경우 소위 피고에 관하여 국제적인 소송경합의 문제가 발생하나 우리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의 금지 규정상의 법원이란 대한민국의 법원을 의미하고 외국의 법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어느 한나라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당연히 타국에 있어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선행된 소송계속에 대하여 우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 소송경합을 금지할 근거가 없고 무엇보다 귀 원에 제기된 본 소송은 일본국의 소송과는 달리 일본국의 전쟁수행에 적극 가담한 기업의 책임만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피고에 일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김돈영의 경우에는 귀 법원에만 제소를 하고 있어 결국 원피고 및 소송물이 일본국내서 제기된 소송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소송관할과 관련된 판례를 보더라도 대한항공사건에 관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의 1987.6.23.의 판례를 위시한 다수의 판례도 국제적 소송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예측승인설에 대한 피고 주장의 반박

피고는 원고들이 일본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하여 일본의 재판결과가 대한민국에서 승인이 예측되어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국에서 진행중인 재판결과가 가지는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주장으로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그 승인이 예측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일본국 법원은 일본국에서 제기된 한국인 일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그 법리적 근거를 여러 가지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본국의 대한제국의 병합과 이에 이은 통치권의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고 따라서 당시 원고들은 완전한 일본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원고들을 동원한 것은 당시 일본법령인 국민총동원법 및 국민징용령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다름 아니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국이 일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국가무답책의 이론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국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승인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가) 먼저 일본국의 대한제국의 병합은 국제법적으로 성립되지도 아니하였고 불법하여 당초부터 원인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나)일본국의 대한제국 병합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러일전쟁 후 일본국이 대한제국의 국권탈취를 목적으로 강요한 주요 조약은 1904.2.23. 의정서(한일의정서), 1904.8.22. 협정서(원 제목 없음: 제1차 한일협약), 1905.11.17.을사늑약(원 제목 없음 : 제2차 한일협약,일명 을사늑약), 1907.7.24.한일협약, 1910.8.22. 한국합병 조약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나 그 내용 및 절차등에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이중 1905.11.17.및 1910.8.22.의 조약에 대해서 보면,

2) 1905.11.17.을사늑약(원 제목 없음 : 제2차 한일협약)

일본국 정부는 러일전쟁의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1905년 7월-8월 사이에 미국과 영국등과 밀약을 맺어 한국보호국화를 용인 받은 후 안심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갔으나 실천단계에서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협정도 무력시위 및 위협에 의해 강요되었습니다. 1905.11.17. 협정 체결일에 일본군은 황제가 있는 경운궁을 포위하고 회담장에 직접 진입하여 한국측 대신을 위협 했습니다. 일본군은 중무장의 상태에서 서울전역의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한국인의 동향을 감시하고 제압하였습니다. 이날 일본측이 한국의 대신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수의 헌병과 경찰을 투입하여 한국황제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측의 공식기록에도 확인이 됩니다.

외교권이양과 같은 중대사항은 그 형식상 (a) 국가원수가 대표(전권위원)를 임명하는 위임장 (b) 양국대표가 서명한 조약문 (c) 조약문에 대한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일본국은 당시 대한 제국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예상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마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정식조약의 문안이 아닌 약식 조약인 협약급의 문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이란 결코 외교권이양과 같은 중대사안에 어울리는 형식은 아니며 따라서 협약으로 강제된 이 협정은 성립요건상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을사늑약은 협정문만이 있고 전권위원의 위임장이나 협정문에 대한 황제의 비준서가 없어 외교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다룰 외교협정으로서는 요건 불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협약에 제목을 붙이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측은 협약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최후의 단계에서도 한국외부대신의 서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영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날인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사 이토 히로부미의 통역관이 헌병을 동반하여 한국외부에 들어와 외부대신의 직인을 탈취하고 대신에게 서명을 강요한 후 직인을 강제적으로 날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강제이며 한국 외부대신이 협정을 강요 받는 현장에 직인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협정대표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고종황제는 이 협정을 위한 전권위원을 위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제는 전권공사 위임조칙을 내려달라는 이토 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권위원 위임장과 비준서가 없고 조약문에서 조차 많은 하자를 가진 이 협정은 법적 효력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을사늑약 강제이후 고종황제는 이전에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각국 원수에게 실로 5차례에 걸쳐 외교권회복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07년 4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1910.8.22.한국합병조약

일본측의 한국병합 합법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1910.8.22.강제되고 8.29.공포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고 일본측은 아직도 이 조약만은 형식상 결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도 한국황제의 최종승인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조약이 관련문서로 (a) 순종황제가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한 위임장 (b) 양국전권위원이 서명날인한 조약문 (c) 조약문을 조칙과 함께 공포하기로 한 양인의 각서 (d) 병합을 고하는 한국황제의 조칙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문헌은 정식조약의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나 (d)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황제의 조칙에는 재가난에 옥쇄만 찍혀져 있고 그 위에 당연히 있어야 할 황제의 서명은 있지 아니합니다. 통감부는 정미조약에 의거하여 1907.11.18.부터는 대한제국의 공문서를 일본식으로 바꾸어 옥쇄를 찍고 그 위에 황제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 황제의 재가를 받은 공문서는 모두 이 서식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칙에 서명이 없는 것은 실제 1907.7.24.정미조약이후 한국내정에 관한 통감의 사전 감독을 이유로 통감부가 소지하고 있었던 옥쇄만 당황하여 찍었던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황제가 병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이로서 일본의 병합은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국내외의 반응

고종황제는 을사늑약이 강제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열강국을 상대로 을사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이 협박과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종황제 스스로 그 조인을 허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인들이 대신들을 강제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밝혀 국제법에 비추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불법성에 관한 비판은 외국인으로부터도 제기되었습니다. 을사늑약 수개월 후 프랑스의 파리법과대학 강사 프랑시스 레이는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국제법의 견지에서 통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먼저 조약 대표를 강제하였고 아울러 1904.2.의 의정서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영토의 보전과 독립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이상 일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27년 미국 국제법학회는 국제조약법 제정에 수반한 법률안의 기초를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에 의뢰하였고 동대학은 1935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약강제에 대한 부분으로 프랑시스 레이의 이론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1905.11.17.자의 을사늑약을 상대방 대표를 강제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4개의 역사적 사례 중 하나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어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는 조약법에 관한 총회보고서에서 하버드 법대 보고서의 견해를 그대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다) 일본국 정부 및 일본국 사법부의 판단

1965.6.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제2조에 1910.8.22.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그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가르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병합조약과 이에 이은 일제강점의 합법성,정당성문제에도 필연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 일본국 정부는 " '이미 무효' 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것이 일한양국간 법률관계의 변동 혹은 설정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병합조약에 대해서는 무효를 확인한 것을 당초부터 무효, 즉 부존

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구조약과 협정이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사이에 양측 모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체결된 것이며 그것이 당시 유효하게 성립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준 국회시 당시 사토 수상도 구 조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또한 자유의사로 조약이 맺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사법부도 이러한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대한 어떠한 고찰도 없이 만연히 병합조약의 적법 유효성을 전제로 당시 원고들은 일본국의 신민으로서 일본법령인 국가총동원법 및 국민징용령에 의해 적법하게 징용당하였고 비록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일본국에는 국가의 행위로 인해 일본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법이 일본에는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히로시마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본국 법원은 일한병합조약에 의해 조선반도가 일본국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조선의 통치는 일본국이 둔 조선총독부가 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후 원고들을 강제 연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당시 국가총동원법 및 국민징용령의 집행을 받은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적 행위로 보면서 국가의 공법상의 행위중 권력적 작용에 의해 입은 일본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무답책의 법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가사 원고들에 의해 불법행위로 주장되고 있는 사실에 의해 원고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경과와 그 원용 및 일본 민법상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이미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일본에서의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향후 이를 승인하리라고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본국의 한일병합에 대해 적법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완전한 일본국민으로 당시 일본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우리 법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효

와 관련하여서 우리 민법 제766조 제2항의 기간과 관련하여 일본법과 달리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이는 소멸시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 그 법적 성질을 달리 볼 뚜렷할 이유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권리를 제척기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도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일본법과 달리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3.7.27. 93다357, 대판 1996.12.19.94다22927등). 따라서 그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효소멸론과 관련된 권리남용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하여도 우리 법원이 일본국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사법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법제가 다른 우리 법원이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예측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에 반합니다.

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일본의 재판결과에 대해 그 승인이 예측되어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별개 회사론에 대해

가. 피고는 기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따라서 원고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근거로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은 소위 구 회계계정채권으로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국의 법률이 외국인인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가사 외국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채권은 피고주장과 같이 소위 구 회계계정에 속하여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가 면책 받을 성격의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피고회사는 전쟁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상호와 기업마크를 사용하며 그 스스로 전쟁전후를 통하여 기업으로서의 동일성을 주장하여 왔을 뿐

만이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왔던 선행태도에도 반하는 신의칙 위반의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는 일본국의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전전의 피고회사는 해산하였고 그 현물출자에 의해 제2회사 3개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위 3개사가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회사가 되었으므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을 하나 위 각 해산 및 설립실태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1)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연합국은 일본국에 주둔하게 되자 다시는 일본국이 침략전쟁을 도모하지 못하게 전시체제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이 군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침략전쟁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려왔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벌을 해체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 침략전쟁을 통하여 막대한 기업이익을 올린 대표적 기업이었기에 그 분할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회사도 일시 3개로 분리된 것이나 제2회사 설립당시에 이미 재통합에 의하여 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즉 피고회사는 1950년 1월 새로 설립된 제2회사 3개사에 그 영업을 인계하고 해산하였지만 이 제2회사는 전전의 피고회사를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제2회사의 설립목적을 보면 전전 피고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그 유기적 일체인 영업용 재산이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종업원의 지위도 승계되었고 제2회사의 각 사장도 전전 회사의 상무들이 취임하였고 경영진마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내에서는 사보를 발행하여 '전 종업원에게 고함.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라'라고 외치며 "3사의 분할은 국법에 따른 것으로 결코 우리들의 의사는 아님을 5만 종업원 여러분들은 명심하라.--- 3사 분할은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나온 회사방위의 긴급조치이다. 대기업의 형태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될 때는 대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소기업의 형태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될 때는 소기업의 형태가 되고---" 라고 하여 법에 의해 회사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피고로서는 불변인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제2회사 설립시에도 피고회사와 동일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동일성을 자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위 제2회사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의 3대재벌 칭호와 상표사용을 금지한 GHQ의 정책에 기초한 령에 따라서 '미쓰비시'의 명칭조차 사용하지 아니하

였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 후에 위 령이 폐지되자 말자 3사는 미쓰비시라는 상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쓰리 다이어몬드 상표를 사용하였고 다음해 1953년에는 전전의 미쓰비시협의회 기능을 하였던 미쓰비시계 기업의 최고연락회의 인 '금요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제2회사 3개사로 분할되었지만 이것이 재통합하여 전의 사업을 계속하였고 유기적 일체성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하였던 것입니다.

(4)아울러 무엇보다 피고 스스로 전전과 전후 피고는 동일성이 있음을 자인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미쓰비시 그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업이래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여 왔고 본건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의 무대였던 피고회사의 히로시마제작소에서도 1995년에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제작소 50년사"가 제작되었고 그곳에는 전전에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히로시마제작소, 동 기계제작소가 설치되게 된 경위와 그 종업원 확보시 원고들과 같은 조선인 징용공으로 이를 충당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5)그러하기에 피고는 원고들이 같은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과 동지회를 결성하여 전후 보상 교섭을 거듭하여 왔을 때 별개회사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며 보상교섭에 대해 대응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1968년 1월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피고에게 미불임금을 청구하였을 때 "미불임금에 대하여는 사내외 관계처에 연락을 하여 여러가지 조사를 하였던 바 보상문제는 일단락되었고 ---"라고 회신을 문서로 하였으며 1974년 8월에 위 협회임원과 일부 원고들이 피고회사 동경본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딱한 입장을 고려하여 원조의 방법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회답하였고 그 후 원고 정창희에게는 동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에서 피고가 별개회사론은 주장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고 선행행위에도 모순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별개 회사론의 법적 주장에 대해

(1)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은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극히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법률입니다. 위 법률들은 일본국이 기업등에 대한 보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기업이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위기에 처할 것을 고려하여 전쟁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피고와 같은 기업에 특별한 경리조치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신속히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국의 법률입니다.

원고들에게 위 양 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우리 법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일본국이 전범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우리 법의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이를 원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 뿐만 아니라 위 양 법이 원고들에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위 양 법이 노동채권과 불법행위채권을 제2회사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실제 위 양 법에 의하면 노동채권은 일반 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과 달리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주체의 변경에 의해 노동채권이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함은 일본국의 판례법리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나) 위 양 법에 의하더라도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지정시 이전에 확정된 급료 그외에 명령으로 정하는 정기적 급여채권' '종업원이 맡긴 금원' '지정시 이전에 확정된 퇴직금 그외에 명령으로 정하는 임시적 급여채권'등은 신 회계계정으로부터 지불이 인정되고 있고 구 회사의 종업원이 제2회사 설립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구 회사와 제2회사가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매우 탄력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다) 아울러 원고들의 채권은 대한민국을 이행지로 하는 일본의 재외부채입니다. 일본법률에 의하면 만약 해산회사의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 금전을 특수관재인에게 보관을 시켜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외부채로서 소멸이 예정되지 않을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단순히 계정상의 이유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라) 또한 일본국의 판례에 의하여도 영업양도, 위장해산,조직변경등 경영주체의 변경만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구 회사의 인적 구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영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이었던 피용자에 대하여 신회사는 신의칙상 별인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져 왔습니다.

(2) 이와 같이 피고는 구 회사로부터 제2회사에 승계되어야 할 신 회계계정중에 원고들 주장의 채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음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위 양 법 자신이 신회사가 이러한 채권을 승계할 것을 배척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위, 제2회사의 설립과 재통합의 경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별개 인격을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공탁으로 인한 미불임금 청구권의 소멸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불임금청구권은 피고회사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공탁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사 일본국에서 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본법에 의해서도 아무런 공탁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일체의 통지도 없었고 공탁서의 형식적 기재조차 불비하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공탁사유 및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피고제출의 증거 을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중 망 박창환에 대한 공탁내역서가 있으나 위 내역서에 의해 입증이 되듯 강제연행을 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들의 주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지 변제의 제공을 거절한 적이 일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공탁시에는 이름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함원 창환이라는 창씨개명의 이름에, 주소 역시 경기도 평택군이라고 밖에 기재하지 않아 유효한 공탁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 시효 및 제척기간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미불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내지 제척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본 청구권이 소멸시효등의 적용을 받는 일본국 혹은 우리 국내법상의 일반 청구권으로 파악할 때 있을 수 있는 주장이나 가사 위 주장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원고들이 지금껏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건 한일협정관련 문서가 전면 공개되고 정부의 법적 의견이 표명되어 책임주체에 대한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2005.8.16.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거듭되는 원고들의 권리주장에 대해 기망 내지 묵살하여 온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신의칙 및 권리남용의 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전쟁범죄로 발생한 원고들의 청구권에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하여 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가. 피고의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민법 제766조 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의 성질과 관련하여 1항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나 2항의 기간의 성질과 관련하여 일부 학설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6.12.19.선고 94다 22927호).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의 주장은 우리 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우리 민법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민법 제166조 1항) 진행합니다. 즉 권리를 법률상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을 말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년 6월 22일 한일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본국과 대한민국정부간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 이후 한일간에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성립하고 이로 인해 국교가 생겼으나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포함)의 재산, 권리,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들의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맺은 위 협정의 형식적 존재라는 법률상의 장애에 의해 원고들은 제소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 일본국은 위 협정에 기초하여 1965년 12월 17일 국내법 제144호(정식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관한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일본 법정에서 일본법에 의해 소멸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위 일본법 제144호의 존재라는 법률상의 장애로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 우리 나라는 일본국과 달리 위 조약 및 협정의 체결과 비준이외에 국내법을 통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가사 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정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아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인 법률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협정이 위헌무효라는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위 협정의 존재 자체가 법률상의 장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3)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미불임금채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특정도 못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1965년의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의 존속 그리고 일본의 국내법 제144호의 존재에 의해 원고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였고, 2005.8.16. 한국정부의 한일협정관련문서 전면공개에 따라 발표한 바와 같이 피고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해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위반

(1)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하였는데 소정의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소멸시효란 사회질서의 안정 혹은 입증곤란의 구제 그리고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고들과 피고간의 그 동안의 관계를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을 우리 법원이 인용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합니다

가) 우선 피고는 원고들의 일관된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요구에 대해 1965년 한일양국간에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위 국가간의 협정을 우선 기다리자고 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거부한 채 한편으로 일체의 자료들을 고의로 은닉 내지 폐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간의 국교수립 및 청구권협정의 체결후에는 위 청구권협정 및 일본국 법률 제144호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어 왔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다른 기업들이 원고들과 같은 징용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 움직임이 보이면 원고들에게도 성의를 보이겠다고 기망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 시점에서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피고의 선행행위에도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 위반이며 권리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일본국으로 강제연행하고 강제연행 후에는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도망을 감시하며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임금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노역의 결과로 인해 원고들은 원자폭탄에 피재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피폭자와 달리 차별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피고에 의해 방치되어 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문명국의 일반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다) 특히 우리 헌법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헌법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국의 침략전쟁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원고들을 강제연행하여 노예노동에 종사하게 한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고 이를 우리 법원에 인용하여 달라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이자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청산의무를 지는 우리 법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국제법상의 청구권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 청구권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이 국내법이 아니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청구권에는 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들의 청구권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가 시효내지 제척기간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들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본건과 같은 전쟁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관련 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원조차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본건 소송에서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최근 공개됨에 따라 소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더욱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룰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2) 1992.2.26.중의원외무위원회의 답변

"정부위원 --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입니다만 이 협정에서는 소위 외교보호권을 방기하였다는 것으로 한국측이 일본국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그와 같은 청구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이를 다루는 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 국내법에 의해 소멸시키지 않은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그 개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권리라고 해도 좋겠고 일본의 국내재판소에 한국의 관계자들이 소를 내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재판의 결과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참의원 및 중의원 회의상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주장을 반복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는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사법부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 되자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개인청구권이 소멸이 된 것인양 모순된 주장을 하기에 이르런 것이고 이것을 피고는 항변으로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일본의 판례 동향

일본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인청구권 관련 판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일본인의 재산권 관련된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일중평화조약,일소공동선언관련의 몇 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그 사안과 관련 법규범의 상이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비교적 초기의 하급심 판례인 동경지방재판소 1956.8.20.선고 판결(호리모토 vs. 일본국)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46년 점령군 병사의 강도행위에 의해 부상당한 원고가 평화조약 제19조(a)항에 의해 일본국이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본국은 주위적으로 평화조약 제19조(a)에 있어서 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외교보호권만이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되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패전국으로서는 당연히 포기되어야 할 숙명을 가진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조약을 체결하여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평화조약 19조(a)는 일본국이 연합국 군대 또는 정부당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긴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즉 국가의 외교보호권과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포괄하여 포기한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하였고 1959.4.8. 동경고등재판소는 평화조약 19(a)는 외교보호권의 포기 뿐만이 아니라 연합국내지 그 국민에 대한 일본 국민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일본국이 재판과정에서 개인청구권 불소멸론을 주장한 것은 다수 존재하나 법리상 참고로 될 만한 사건은 1974.9.24.의 동경지방재판소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본국은 "평화조약 19(a)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며 일본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일본국민의 개인적 청구권(특히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권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국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그 권리를 상실 시키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다"고 까지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후의 개인의 청구권소멸여부에 대해 대표적 판례로는 1968.11.27. 최고재판소 판결(아키야마 vs 일본국)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평화조약 14(a)2(1)에 의해 카나다에 있는 재산을 상실한 원고가 일본국 헌법 29조 3항에 의거 일본국을 상대로 손실의 보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평화조약 위 조항에 의해 일본정부가 연합국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재외재산에 대한 처분을 승인한 행위는 일본국이 연합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이행을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충당시킨 것이기에 일본국 헌법 29조 3항에서 말하는 공용수용에 해당하여 일본정부는 보상의무를 져야 하는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평화조약 위 조항은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국민의 재외재산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삼가한다는 취지라고 주장을 하였고 따라서 본건 재외재산처분의 승인은 재산의 권리변동원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고 최고재판소도 평화조약의 위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국민이 당해 외국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는 소위 이의권 내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재판례를 검토하면 주로 피고인 일본국은 주위적으로 개인청구권 불소멸을 일관하여 주장을 하였고 재판소는 초기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취하였다가 차츰 외교보호권 소멸론을 정식으로 채택하기도 하다가 이어 애매한 입장에서 원고들의 청구권을 배제하였던 것이 일본 재판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정부의 해석에 대하여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권리등이 소멸하였는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은 한일청구권협정이 그 동안 공개되지 아니한 관계로 많은 해석상의 의문을 초래하였는 바 크게 나누어 한일청구권협정이 공개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문서공개소송 이전의 한국정부의 입장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과 관련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되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재일한국인 피징용자 관련 답변

재일한국인 군인 군속인 석성기외 4인의 전쟁피해자가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던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일본국 법률 127호)'상의 장애연금지급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시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 피징용 피해자들의 장애연금지급청구가 다른 일본인 군인군속과는 달리 위 원호법 부칙 2항에 의해 일본국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그 기각의 주된 논리가 피고측의 주장 즉 위 재일한국인 피징용 부상자들의 원호문제는 양국간의 외교적 협상에 해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에 위 부칙 2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재일한국인 피징용 부상자들이 개인의 권리를 일본국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외교적 교섭에 의해 해결이 예정되었고 실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해결이 되었는가가 문제시 되는데 위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고 되어 있고 다음 2항에는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규정하면서 그 a항에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일한국인 피징용자들은 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동 협정의 제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일한국인 피징용 피해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일부 소멸되었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에서 그 범위와 관련하여 그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동조 2항 a 에 따라 그 개인의 권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1994.1.26. 당시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낸 민원회신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2항 a는 동조 1항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재일한국인의 권리,재산관계를 청구권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을 하여 재일한국인 군인군속의 권리를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암묵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2조 1항에 의해 개인의 권리 등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일한국인의 권리등은 제2조 2항상의 예외사유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나 주된 쟁점은 재일한국인 군인군속의 권리의 존속 여부여서 확실히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입장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이와 관련되어서는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답변등이 있습니다.

● 1991년 7월 10일 이상옥 외무장관의 국회 답변

"정부 레벨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 1995년 9월 20일 공노명 외무장관의 국회 답변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체결로 일단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금전적 보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1997년 11월 6일 이미경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외통부)

질의: 한국정부가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

답변: 또한 정부는 도덕적 우위의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개별적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996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일측이 성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1999년 8월 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통부 아일 22220-641)

질의: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입장

답변: 군대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인권문제로 1965년 한일협정의 해석과는 별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

질의: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입장

답변: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군대위안부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나,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2000년 10월 9일 김원웅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정빈 외통부 장관)

질의: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배상청구권이 끝났는지

답변: 양국 정부간에 청구권문제를 일단락 지었으며, 개인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이라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인단 앞으로 보낸 2001.7.19.자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양성철의 답신에 의하면 "군대위안부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국가범죄로서 일본의 국가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당시 군대위안부문제가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으나, 우리 정부는 1993년 일본정부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나) 문서공개소송의 경과 및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귀 원에 원고들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회신치 아니하고 문서제출에 대해서는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북일간에 수교시 까지 문서공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결국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준비서면에서 정돈되지 않은 논리로 원고들의 권리가 일부 소멸된 것인 양 주장하나 이는 문서공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입론된 것에 불과하여 관련 문서 공개후의 정부 견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일회담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 및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지난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문서공개에 즈음하여 발표된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견해를 보면,

1)한일청구권협정의 기본 성격과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 배상차원이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한일양국간의 해방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으

로, 여기서 해방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라 함은 1945년 해방이전의 통상의 사회경제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국가간,개인간 채권채무로서 당시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있어 규범적 전제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찾는 견해로 실제 일본측은 일제침략에 대한 청산차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체결에 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의 범위내에서 통상의 사회경제적 생활관계에 발생한 국가간,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의 처리에 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특히 당시 일본 법률에 의해 보호되었던 것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려 하였음이 이번 문서공개에 의해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배의 배상과 같은 성격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분은 위 청구권 협정 어디에도 사죄내지 반성의 문언이 없어 이 부분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처리된 부분이 아님이 밝혀 졌습니다.

2)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 보면 한국정부는 "해방전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한국정부와 국민의 민사적 재산권"을 일본국이 자국내 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청구권 협정에서 합의를 하였으며, 따라서 협정체결 직후 제정된 일본 법률에서 소멸시킨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한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체재산권,후생연금 탈퇴수당등 일부 재산권은 일본법에서 소멸시키지 않았으므로 개인재산권 소멸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전 일본 헌법상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이 해방전 일본법에 의해 의한 합법행위 였으므로 한국민은 보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통 받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당시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보상 요구가 정치적 차

원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폭피해자의 경우는 원폭피해 문제는 청구권협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전후 일본이 제정한 원폭피해자지원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도 80년대 이후 의료지원등 일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피폭자에 대한 진료나 생활 보조금등 기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원폭피해자 2-3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생활지원을 일본측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견해에 의하면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위협 하에 원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 후 원고들이 원폭을 피폭 당하게 한 후, 원고들을 방치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미불임금의 청구부분도 통상의 사회경제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4) 우리 법원의 판례

이에 대하여는 우리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5) 소 결

이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가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일본국의 종래입장 및 한국정부의 주된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며 일본의 판례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최근 한일회담관련 문서의 공개에 즈음하여 민관공동위원회가 관련 문서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법적 견해를 밝힌 바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일본 및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국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와 같은 전쟁 피해자들을 이미 끝난 문제를 돈 욕심에 의해 분쟁을 야기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11.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편승한 피고의 책임은 전쟁이 끝난 후 국제법과 조리 그리고 인도적 원칙에 따라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분단, 그리고 일본국내 전범 세력들의 미 청산이란 한계 속에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실현되지 못하여 오던 중 이제 겨우 국내 법정인 귀 원에서 우리 헌법의 정신 하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 바, 원고들의 청구는 본건 청구는 인용이 되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정의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 1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 산

담당변호사 정 재 성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부산지방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법무법인 산일합동
12/15 2부제시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　　고　이근목외 5

피　　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의하여 2005.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들을 통해서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과 같은 개인의 일본국이나 일본국 국민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964. 4. 7. 당시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조선은행 및 한국식산은행의 대일재산만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 총액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일회담이 타결될 경우 이러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 총액 중 이러한 민간인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 또 정부는 다만 민간인들을 위하여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하였다

2006. 10.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청우빌딩 4층)
法務法人 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대일민간청구권, 위 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뒤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83,519건에 대하여 9,187,693,000원의 보상금이 현금 또는 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고, 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자금을 수령한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청구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회사는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별개의 회사로서 이러한 사정은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거듭 확인된 바 있습니다.

피고가 기존의 준비서면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새로이 설립된 법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法務法人 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인으로서,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법적 근거 및 법적 이론을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석명을 해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현재 피고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바, 원고들이 피고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승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장을 정리하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호 증 목 록

1. 을제10호증	조선은행을 비롯한 민간인보류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 조치에 관하여
1. 을제11호증	민간인 보유 대일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 조치

2006. 10. 25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 창 용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法務法人 青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